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0. 14 선고 2020가단1074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찬우

변론 종결2021. 8. 19.

판결 선고2021. 10. 1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남 함안군 C 전 1,26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1,269㎡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8. 22. 접수 제14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경남 함안군 C 전 1,26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2.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D와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8. 6.경까지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의 범죄사실(의료법위반) 및 위 병원을 운영하며 2011. 10. 26.부터 2017. 12. 5.까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38,637,474,7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04, 2019고합51(병합)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이 이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 2020도93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1.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7. 4. E요양병원에는 환수금액 45,516,460,300원, B과 D에게는 환수금액 36,905,263,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201724 판결 참조). 한편 2013. 5. 22.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2)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의료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처분 규정을 신설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요양기관인 E요양병원에게 개개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때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8. 14.에는 적어도 B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38,637,474,700원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시가 13,705,200원), 경남 함안군 G 전 1,088㎡(시가 14,252,800원), 경남 함안군 H 전 241㎡(시가 978,460원)이 있었는데(적극재산 합계 28,936,460원, 갑 제7 내지 9호증 참조), 이는 앞서 살펴본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38,637,474,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재량행위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B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각각의 지급일로부터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채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을 각각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으로 선회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정할 뿐이며, 같은 법 제57조가 정한 보험자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0조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이고, 또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이를 3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최초 발생일은 2011. 10.경)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25. B 소유의 경남 함안군 H 토지에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9. 10. 28.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최초의 채권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의 항변을 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창원지방법검찰청은 2017. 12.경 B의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편취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B은 검찰 수사 도중 2018. 9. 14. 구속되어 2018. 10. 10. 구속기소된 점, 피고는 B의 처형으로서 동생을 통해 동생의 남편인 B의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14. 당시 B이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정 및 이에 따라 그 금액의 반환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넉넉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B의 채무초과 상태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권홍

1) 단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별지 목록에서 '경남 함안군 F 전 1,26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경남 함안군 C 전 1,269㎡'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참조).